|  |  |  |
| --- | --- | --- |
|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시범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5호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이 국제 및 국내 두 시장의 두 가지 자원을 총괄하는 능력을 한층 향상하고,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발전의 품질과 이익을 제고하며,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단계 시범상황을 결합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및 해관총서는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확대하여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부여 시범(이하 ‘일반납세자 자격시범’)을 절강영파 수출가공구, 성도첨단 종합보세구, 아라산구 종합보세구, 광서북해 수출가공구, 북경천축 종합보세구, 상해민항 수출가공구, 침주 종합보세구, 요녕대련 수출가공구, 복주 보세항구, 복주 수출가공구, 청도전만 보세항구, 무한동호 종합보세구, 무석첨단구 종합보세구, 소주첨단기술산업개발구 종합보세구, 전장 종합보세구, 회안 종합보세구, 오강 종합보세구 등 17개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확대한다.  2. 일반납세자 자격시범 퇴출기제(적용범위는 앞서 시범한 7개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을 포함)를 구축한다.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신청하여 36개월을 초과하는 기업은 시범 퇴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 퇴출 후,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내 비(非)시범기업 세수정책을 회복하여 집행하며 또한 36개월 내 다시 시범을 신청할 수 없다.  시범 퇴출을 신청한 기업은 사전에 주관세무기관과 주관해관에 시범 퇴출 신청을 제출하여 시범 퇴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시범기업은 퇴출 전 세금을 정산해야 만 퇴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구역 내 기업의 시범 퇴출 전에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허가하지 않으며, 원가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시범을 퇴출하는 기업은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수령 또는 발행할 수 없다.  3. 상술한 조정 외에,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 정책의 기타 내용은 계속하여 <국가세무총국재정부해관총서의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전개하여 부여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재정부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65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8년 1월 12일 |  | **关于扩大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5号  为进一步提升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统筹国际国内两个市场两种资源的能力，提高海关特殊监管区域发展的质量和效益，推动加工贸易转型升级，促进贸易便利化，结合前期试点情况，国家税务总局、财政部和海关总署决定扩大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将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以下简称一般纳税人资格试点）扩大到浙江宁波出口加工区、成都高新综合保税区、阿拉山口综合保税区、广西北海出口加工区、北京天竺综合保税区、上海闵行出口加工区、郴州综合保税区、辽宁大连出口加工区、福州保税港区、福州出口加工区、青岛前湾保税港区、武汉东湖综合保税区、无锡高新区综合保税区、苏州高新技术产业开发区综合保税区、镇江综合保税区、淮安综合保税区、吴江综合保税区17个海关特殊监管区域。  二、建立一般纳税人资格试点退出机制（适用范围包括前期试点的7个海关特殊监管区域）。申请一般纳税人资格试点满36个月的企业可申请退出试点。退出试点后，恢复执行海关特殊监管区域内非试点企业税收政策且36个月内不得再申请试点。  申请退出试点企业应提前向主管税务机关和主管海关递交退出试点申请，启动退出试点工作。试点企业在退出前，应结清税款，方可办理退出手续。对区内企业退出试点前的增值税留抵税额不予抵扣或退还，转成本处理。退出试点的企业，除销售服务、无形资产或者不动产外，不得领用和开具增值税专用发票。  三、除以上调整外，一般纳税人资格试点政策其他内容继续执行《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关于开展赋予海关特殊监管区域企业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试点的公告》（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公告 2016年第65号）的有关规定。  四、本公告自2018年2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财政部  海关总署  2018年1月12日 |